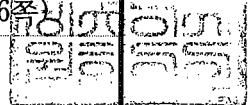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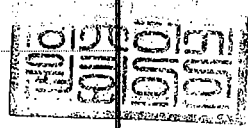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정 명	한 글	홍 긍 섭	일본명	
	한 자	洪 肯 燮	이 명	
출 생 연월일	1850년 12월 30일		사 망 연월일	1923년 6월 3일
본 적	경성부 소격동 131번지 (1923년 주소)			
주 요 경 력	1904년 이전			
	1850.12.30	출생 (제적부)		
	1896.5	법관양성소 제2회 졸업 (구한국관보, 1896년 5월 2일)		
	1896.5.28	함흥부 주사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 1996, 206쪽)		
	1898.3.24	독립협회 총대위원 (독립신문, 1898년 3월 29일 3면)		
	1898.8.17	학부 주사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 I, 1994, 834쪽)		
	1898	독립협회 사법위원 (황성신문, 1899년 1월 19일 3면)		
	1901.1.5~1901.1.24	중추원 의관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 I, 1994, 834쪽)		
	1904년 ~ 1945년			
	1904.8	일진회 평의원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4쪽)		
	1904.11.2	일진회 황해도조사위원 (같은 자료, 卷之一, 27쪽)		
	1905.12.22	일진회 평의원장 (같은 자료, 卷之二, 114쪽)		
	1905.12.26	일진회 총무원 (같은 자료, 卷之二, 114쪽)		
	1906.6.1	한성농공은행 이사 (안용식, 대한제국관료사연구 III, 1995, 771쪽)		



1906.12.21~1909.12.6	일진회 부회장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三, 45쪽; 卷之七, 57쪽)
1907.8~1908.5	상업회의소 회두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1일 2면, 1908년 5월 10일 2면)
1907.10	대일본제국황태자전하봉영한성부민회 부회장 (황성신문, 1907년 10월 15일 1면)
1908.6	사립 태극학교 찬성장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5일 2면)
1908.11	일본정부로부터 훈4등 서보장 받음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1909.2.21	한성부민회 서부 西五坊會 평의원 (황성신문, 1909년 2월 23일 2면)
1909.10.19	일진회 삼파연합정견협정 위원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七, 34쪽)
1909.12.6	일진회 탈퇴 (같은 자료, 57쪽)
1909.12.10	일진회 소관 농업회사 부사장 해임 (같은 자료, 63쪽)
1910.3.7	調陽俱樂部 총무 (황성신문, 1910년 3월 9일 1면)
1911.7.29	문예구락부 총무 (매일신보, 1911년 8월 1일 3면)
1912.3.29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받음 (조선총독부관보, 248호, 1913년 5월 29일)
1919.11.16	大東文化社 임시 사장 (매일신보, 1919년 11월 18일 2면)
1919.12.5	大東斯文會 발기회 좌장 (대동사문회보, 제1호, 1920, 59쪽)
1920.1.25	대동사문회 창립총회 임시회장 (같은 자료, 61쪽)
1920.1.26	대동사문회 상무이사 겸 景賢部 주임 (같은 자료, 74쪽)
1923.6.3	사망 (조선일보, 1923년 6월 4일 3면)



1.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1) 의병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거의선언서」 작성 관여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文明社, 1911, 20~24쪽.

“(1907년 9월 19일) 지방폭도의 창궐함을 진정할 방침을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총무원회를 열고 의결안이 아래와 같다.

부회장 홍공섭이 「舉義宣言書」 공포하기로 제의한 일에 대하여 선언서를 발표하기로 가결하여 선언서 3천장을 인쇄하되 監印委員은 한석진, 박형채로 선정하고 制度委員은 홍공섭, 한석진, 김택현, 최영년으로 선정한 후 선언서 草件을 공포한 사의가 아래와 같다.

[거의선언서] 이해를 망각하고 시세를 오해하는 소위 의병이라 冒稱하는 執迷徒衆아. (중략) 본회는 동포의 戕殺함을 애석하여 尙此 귀순을 佇待하며 초래키로 기도하여 一言 先佈하거니와 爾若 其過를 不悔하며 其惡을 不悛하여 一直頑拒하면 본회에서 義旗를 特舉하여 지휘초토하는 의무와 義能이 堂堂 自在한지 矛盾를 立하며 我戈를 執하여 鯨鯢의 戮을 行할 것이니 嗟爾 執迷徒衆은 勿悔하라.”

▶ 이인섭,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五, 25쪽.

“(1907년 9월 21일) 하오 1시에 국민연설대에 일반회원 4백여 명이 회동하여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간사 최동섭이 연단에서 선언서를 낭독공포한 후에 회장 이용구가 설명 왈 (중략) 본부에서 총무원 제세와 鎮定할 방침을 연구 중 부회장 홍공섭이 선언서 공포할 의견을 제출하여 총무실과 평의실에서 일체 가결되었으며 금차 총회를 열어 공포하오니 의견을 설명하여 可否를 결정하라 하매 선언서를 공포하기로 일치가결하였다.”

2. <특별법> 제2조 제19호(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와 관련하여

1) 홍공섭의 서훈과 공적 내용

▶ 「한국 궁내부 특진관 종1품 훈1등 신기선 외 47명의 敍勳 및 賜金の 건」, 『서훈』 권7, 외국인 5, 1908.

“위의 건을 삼가 재가한다.

명치 41년(1908) 11월 7일

내각총리대신 후작 桂太郎

서훈 및 사금 議案

한국 궁내부 특진관 종1품 훈1등 신기선 외 37명

위의 사람은 日露戰役 당시에 각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의 군사행동을 보조하고 혹은 도로·교량을 수리하고 군수품을 징발하고 기타 숙소의 공급, 賊情 정찰에 힘쓰는 등 그 공적이 현저하다.”

훈등 및 사금액	관직	位	한국훈등	제국훈등	씨명
훈4등 瑞寶章	前 議官	6품			홍공섭

▶ 『황성신문』, 1910년 8월 14일 1면, 「사령」.

“전 의관 홍공섭 일본국으로서 領受한 훈4등 서보장 (중략) 議員 등에게 각기 영수한 훈장에 패용함을 勅裁를 經하여 准許함(이상 8월 10일 表勳院).”

▶ 『韓國併合記念章裁可書 五』

중전 일한관계에 공적 있는 자(제국 훈장을 받은 자)									
병합관계사항	병합당시 관직	현관직	位階	勳等	爵	氏名	사망 연월일	유족	
								관계	氏名
일로전쟁 때 우리				勳四		홍공섭			

군에 편의를 제공한
공적이 특히 현저함

▶ 조선총독부관방비서관, 「官報 제248호 부록(1913.5.29)」, 『韓國併合記念章授與人名』, 1913.

“훈4등 홍공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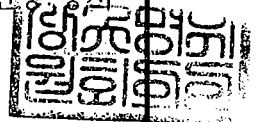
■ 기타사항① 일진회 탈퇴 건

-출전①: 『國民新報』, 1909년 12월 8일 2면, 「일진회총회(부회장의 선거)」.

“일진회 부회장 홍공섭은 입회 多年에 근로가 多大하다 하는 人인데 금회의 絲穀의 一欸으로 餘年을 終하겠다는 主旨로 該會에 퇴회청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니 未知케라 絲穀計로 餘年을 終할 方策은 天錢이 一夜에 雨至하였는가 該會 會體의 關係는 此等 1,2개의 劣惡人種에 不在하되 渠輩의 性命은 可憐可哀하다고 全會가 唾罵하야 (후략)”

- 출전②: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8일 2면, 「용서할 수 없다」.

“일진회 부회장 홍공섭은 재작일에 퇴회하였는데 홍공섭은 본래 일진회의 중임으로 있어 궁흉극악한 문제를 주출하였은즉 그 죄악은 이로 말할 수 없을뿐더러 일전에 황성신문 기자를 속인 것으로 불지라도 또 무슨 흉협한 화심을 품은지 알 수 없는지라. 우리는 제가 아무리 개과천선할지라도 그 죄악은 단당 용서치 못하리라 하노라.”



- 출전③: 『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12일 2면, 「들락날락」.

“일진회 부회장 홍공섭은 퇴회하였다더니 재작일 일진회 평의회에 다시 출석하였다더라.”

- 출전④: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30일 1면, 「받을 까닭 없어」.

“일진회에서 이왕에 그 회 사무를 각근히 보던 자에게는 퇴회 여부를 무론하고 상여금 백환식을 주었는데 퇴회한 사람 중에 윤길병 홍공섭 양씨는 그 돈을 퇴각

하였다더라.”

- 출전⑤: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0일 2면, 「또 들어오라고」.

“일진회장 이용구는 퇴직한 홍공섭씨를 다시 끌어 들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권고하기를 퇴직할 때에 리총리[이완용-작성자]에게 비밀금을 받았다는 말이 있으니 그 돈을 판급하마 하매 홍씨가 준절한 말로 거절하였다더라.”

▣ 기타사항② 대동문화사 및 대동사문회 활동 건

- 출전①: 『매일신보』 1919년 11월 18일 2면.

“대동문화사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정동 경성구락부에서 발기총회를 開” 하였는데 출석원은 발기인 외 십수명에 달하였으며 임시사장으로 홍공섭씨(중략) 등 칠인을 선정하였으며 (중략)

규약

제1조 명칭은 대동문화사라 함.

제2조 본사는 덕성을 함양하며 윤리를 존중하고 친목을 꾀하며 근검을 행하고 哀慶을 聞하며 환난을 구하고 지식을 교환하며 사업을 진흥하고 법률 범위 내에서 동포의 권리를 伸張하고 행복을 증진하기를 목적함 (후략)”

- 출전②: 『독립신문』, 1920년 6월 17일 2면, 「漫히 黃白을 散하며 무슨 團이니 무슨 會니를 조직하여 독립운동 대항에 전력 - 時哉時哉라고 날뛰는 수다한 佞鬼輩」.

“敵의 走狗의 집합체인 大東斯文會 감히 口를 開하여 조선독립에 반대 소위 대동사문회 회장 홍공섭과 이중혁은 공모하고 曰 조선독립에는 반대한다 현금 시기가 절대로 독립은 아니 된다 하며 상업에 종사하라 누구든지 자본이 없으면 당국에 교섭하여 주마 하고 또 무슨 단체를 조직하려고 획책중이라.”

1. 홍공섭은 1907년 9월 19일에 열린 일진회 특별총무원회에서 의병 진압의 취지를 담은 거의선언서 공포를 제안했다. 홍공섭의 제안은 그대로 가결되어 선언서가 작성되었다. 이 선언서는 9월 21일에 열린 일진회 특별총회에서 참석회원 4백여 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홍공섭은 이 거의선언서 공포의 제안자이며 초안을 작성할 때 제도위원으로 적극 활동했다.

선언서는 일진회원을 살상하는 의병들을 비난하면서 의병에게 먼저 귀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일진회 스스로 의병 진압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후 일진회는 정부에 의병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단의 전국적 설립을 촉구하였다. 또 일진회 스스로 자위단원호회를 조직하여 각지에서 자위단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강제하였다. 이처럼 1907년 말에 전개된 일진회의 반(反)의병활동은 홍공섭의 거의선언서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홍공섭의 행위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의병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홍공섭은 러일전쟁 당시에 일진회의 평의원으로서 일본군에 협력하고, 1908년 11월 7일에 그 대가로서 일본정부로부터 훈4등 서보장을 받았다. 또 같은 이유로 합병 이후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같은 홍공섭의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9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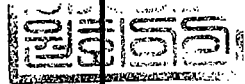
홍공섭은 일진회의 창립과 함께 평의원, 평의원장, 총무원 등 요직을 역임한 뒤 1906년 12월부터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일진회의 수많은 간부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에도 회장 이용구와 함께 부회장 홍공섭의 지위는 고정적이었다. 홍공섭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진회를 대표하여 한성부민회

등 각 단체의 중책을 맡았다.

홍궁섭은 1909년 12월 일진회가 합방청원성명서를 발표하자 부회장을 사직하고 일진회를 탈퇴하였다. 당시 홍궁섭의 탈퇴 이유를 놓고 이완용의 매수, 합방청원 논의과정에서의 배제, 합방청원 자체의 반대 등이 제기되었지만 홍궁섭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일진회 부회장 재직 당시의 대내외 활동과 합병 이후의 행적을 볼 때 일제의 조선지배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서 홍궁섭은 1913년 5월에 일본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일제는 한국합병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하였다. 한국병합기념장은 대부분 현직 관료에게 주어졌지만 홍궁섭은 민간인의 신분이었다. 일진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합병전후의 활동으로 인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홍궁섭은 1920년 1월에 유림의 친일화를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후원하에 설립된 대동사문회의 상무이사 겸 경현부(景賢部) 주임을 맡았다. 홍궁섭은 이 단체의 간부로 재직 시 ‘조선독립에 반대’ 하며 지금은 ‘절대로 독립의 시기가 아니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1920년 6월 17일자에서 홍궁섭을 조선총독부의 조종을 받는 ‘창귀배(俎鬼輩)’로 성토했던 사실이 있다.



이처럼 홍궁섭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장을 받고 국권침탈에 반대하는 의병운동을 방해하였다. 합병 이후에도 홍궁섭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일제의 조선 지배를 인정할 뿐 아니라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홍궁섭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19호에서 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11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